

이용수칙 **신구대조문**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회원)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구분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의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납부한자. 2. 일일회원이라 함은 수영장이 정한 공개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 요금을 납부한자. 3. 신규 회원이라 함은 당해시설에 최초 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도 해당된다. <p>가. 반환 후 재가입 회원 나. 타 강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</p>	<p>제 2조(회원)</p> <p>① 진남수영장(이하 “수영장”)의 회원 구분은 강습회원(일반강습반, 어린이반, 실버반), 월권 자유수영, 일권 자유수영 회원으로 구분하며, 강습회원에 대한 개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일반강습반(초급·중급·고급반) : 만 13세 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 2. 마스터강습반 : 만 13세 이상 67세 이하의 여수시민으로서 수영장 또는 망마 국민체육센터에서 고급 강습반 3개월과정을 수료한 자 3. 어린이반 : 초등학교 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여수시민 4. 실버반 : 만 65세 이상의 여수시민 5. 자유수영반 : 대상 및 강습기간 제한 없음 <p>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적·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일반 수영강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.</p>
<p>제9조(회원가입신청)</p> <p>① 회원가입은 수영장에 소정의 신청서에 작</p>	<p>제 3조(회원가입신청)</p> <p>강습회원 및 월권 자유수영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작성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원가입 신청은 공단에서 지정한 소

현행	개정안
<p><u>성 제출하며,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갖으며,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수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 이때 수영장 이용수칙 서약서에 자필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시 강습반은 1개반, 강습시간은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수영장은 회원가입신청서에 신청한 내용으로 접수하며, 기재내용이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 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(회원)에게 있다.</p> <p>제12조(등록)</p> <p>⑱ 회원모집 당첨자 및 대기자는 법상 부부관계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부부간 양도 시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</p>	<p>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시 이용수칙 서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4.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 시, 또는 변경된 연락처를 안내데스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(회원)에게 있다.</p> <p>5.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희망시간대의 대기자 후순위로 접수된다. 단, 강습 중인 회원은 대기자 후순위 등록이 불가하다.<신설></p> <p>6. 제 5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강습반은 강습 중에도 대기 가능하다. 단, 마스터반 강습 중일 때는 제외한다.<신설></p> <p>7. 대기자의 권한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 단, 법상 부부관계의 배우자의 경우 입증 가능한 서류 제출 시 양도 가능하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양도한 이는 양도일로 부터 1년간 회원 신청 및 자격을 제한한다.</p>	
<p>제12조(등록)</p> <p>④ 회원등록은 등록기한 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(문자 2회 발송), 미등록시 등록 포기자로 간주하며, 본인이 원할 시 대기열 후순위 등록은 가능하다.</p> <p>⑥ 월권 자유수영 회원은 이용기간이 1년이 경과되면 종료되며, 6개월 후 월권 자유수영 재등록이 가능하다. 단, 자유수영 월권 등록은 록커 상황에 따라 즉시 이용이 아닌, 대기접수로 전환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이용자의 권리와 의무)</p> <p>⑤ 회원증(카드)은 타인에게 양도, 양수가 불가하며, 분실 시 즉시 수영장에 통지 및</p>	<p>제 4조(회원등록)</p> <p>① 등록 통지의 방법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의하며, 등록된 연락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.<신설></p> <p>② 회원등록은 등록기한 내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, 미등록시 등록포기자로 간주되고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한다.</p> <p>③ 회원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지참 후 이용료 결제를 완료하여야한다.<신설></p> <p>④ 월권 자유수영 이용은 상시 가능하다. 단, 락커 상황에 따라 즉시이용이 아닌, 대기접수로 전환할 수 있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재교부를 받아야 한다.(재발급 수수료 2,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.)</p>	
<p>제11조(강습)</p> <p>④ 강습반별 탈의실 입장시간은 <u>강습시작 20분 전과, 강습시작 후 30분 전까지이며, 수영장 경영폴 내로 입장은 강습시작 10분 전에 입장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반별 강습시간은 배정시간 매시간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제16조(시설이용)</p> <p>2. 회원의 시설이용은 이용시간 내 당해 프로그램에 한해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.(이용 시 2시간을 넘을 수 없다)</p> <p>3. 해당 강습시간 불참자가 타 시간을 이용할 경우 자유수영 시간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등록)</p> <p>⑰ 강습반 회원은 강습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.</p> <p>⑱ 강습반 대기자 중 강습시간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강습시간 대기열의 후순위로 대기할 수 있다.</p>	<p>제 5조(강습)</p> <p>① 탈의실 입장시간은 자유수영 시작시간 20분전부터 종료시간 20분 전 까지이며, 수영장 내 입장은 자유수영 시작시간 10분 전 부터로 한다.</p> <p>② 반별 강습시간(자유수영포함)은 배정시간 매시간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, 50분 경과 시 지체 없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.</p> <p>③ 회원의 시설이용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, 1회 이용 시 강습 및 자유수영 포함 2시간을 넘을 수 없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 5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강습반 및 강습시간의 대기자 후순위로 대기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이용료)</p> <p>① 이용료는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.</p> <p>② 이용료는 현금 일시납과 신용카드로 선납하며 <u>신용카드는 1개월 또는 3개월로 일시 또는 분납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 6조(이용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이용료는 <u>선납을 원칙으로 하며, 회원의 경우 3개월분까지 선 결제 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3조(이용료 반환)</p> <p>① 회원이 등록이후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재난, 재해 등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위약금 없이 정지기간의 이용료 전액 반환</p> <p>2. 강습시작 후 이용료 반환 시 총 결제금액의 10% 위약금과 사용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를 공제 후 반환.</p> <p>② 제1항 제3호에 의한 이용료 반환 시 꺼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 이용료를 30일로 계산하며, 환불신청 당일까지의 일수를 포함한다.</p>	<p>제 7조(이용료 반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자유수영 회원기간 중 강습회원으로 전환될 경우 위약금 없이 사용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반환<신설>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제 1항 제 2호 및 3호의 경우 환불신청 당일의 공제여부는 출석유무를 판단해 미출석자일 경우 사용 취소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.</u></p> <p>② <u>제 1항에 의한 공제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위약금 공제 : 총 결제금액 × 10%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이용료 반환은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직접 수영장을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기 발급된 회원증(카드)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는 해당 회원의 신분증, 통장사본, 회원카드,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신청서를 제출한다.(어린이의 경우 등본 지참)</p> <p>④ 강습종료일 15일 미만은 이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</p> <p>⑤ 반환금은 본인명의 은행계좌 입금이며, 신청일로 부터 <u>약 30일</u> 이내에 지불한다.</p>	<p>2. 이용일수 공제 : (결제금액 / 이용가능기간) × 이용일수</p> <p>3. 제 2호의 이용가능기간은 1개월 결제분 기준 30일을 의미한다.</p> <p>③ 이용료 반환은 회원본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. 단,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 1항 제 3호의 경우 강습종료일 15일 미만은 이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</p> <p>⑤ 수영장은 반환금을 회원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신청일로 부터 <u>운영일 기준 10일</u> 이내에 지불한다. 단, 어린이회원은 등본상 보호자의 통장계좌에 지불할 수 있다.</p>
<p>제14조(연기)</p> <p>⑤ 연기는 3개월 등록자에 한하여 연</p>	<p>제 8조(회원기간 연기)</p> <p>① 회원은 3개월 단위마다 1회에 한하여 연기신청이 가능하다. 단, 단위기간 산정에 있어서 연기신청으로 인해 정지된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.<신설></p> <p>② 연기신청은 소요기간이 최소 5일 이상이고, 연기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</p>

현행	개정안
<p>키랄 수 있으며, 연기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채 연기와 연기 후 환불은 할 수 없다.</p> <p>⑥ 이용기간 연기는 위 항목에 대한 본인 사유로만 연기신청이 가능하며,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 직접 수영장을 방문하여 연기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는 해당 회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신청한다.</p>	<p>없다.</p> <p>③ 연기는 회원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,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한다. 단,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.</p>
<p>제15조(운영시간)</p> <p>① 수영장 운영시간은 평일 06:00부터 폐장은 21:00, 토요일은 09:00부터 17:3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사항은 적용일 이전에 별도 게시한다.</p> <p>② 수영장의 정기휴장은 <u>매주 일요일, 법정공휴일(명절, 대체휴무일 포함)</u>로 한다.</p> <p>③ 수영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휴장을 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및 사유를 게시 또는 문자 공지한다.</p> <p>가. 천재지변(태풍, 폭우 등) 등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</p> <p>나. 수도권 공사 등 수도물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</p> <p>다. 수영대회 개최 등 공식행사 개최시</p> <p>라. 시설의 보수, 보강, 기타 운영상 불</p>	<p>제 9조(운영시간)</p> <p>① 수영장 이용시간은 평일 06:00부터 20:20까지, 토요일은 09:00부터 17:30까지이다.</p> <p>② 정기휴장은 법정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, 근로자의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수영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휴장을 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및 사유를 홈페이지 및 현장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로 공지한다.</p> <p>1.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<신설></p>

현행	개정안
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	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
<p>제4조(이용자의 권리와 의무)</p> <p>⑥ 이용자는 수영장에서 지정한 실내수영장용 규정 수영복 및 수영모, 수영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수영장을 이용하여야 한다.</p> <p>제18조(소지품의보관)</p> <p>⑤ 이용자는 수영장 이용 후 샤워실, 락커룸 등에 개인 샤워용품을 보관해서는 안되며 퇴실 시 본인이 직접 가져가야 한다.</p> <p>제7조(회원의자격제한)</p> <p>4. 만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.</p> <p>5. 만4세 이상 어린이는 남·여 탈의실을 구분하여 입장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이용자의 권리와 의무)</p> <p>⑦ 4세 미만의 어린이와 동반 입장할 경우 방수기저귀 필히 착용하여 입장하여야</p>	<p>제 10조(이용자 준수사항)</p> <p>시설 이용 시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여성회원으로서 생리기간인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을 자제한다.<신설></p> <p>4. 만6세 이하 미취학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입장이 가능하다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만3세 미만의 어린이와 동반 입장할 경우 방수 기저귀를 필히 착용 후 입장하여야</p>

현행	개정안
<p>야 하며, 이에 불응 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등록)</p> <p>⑭ <u>초등학생</u>이 경영풀 자유수영 입장을 원할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보호자(가족, 선생님, 인솔자 등) 동반 입장하여 이용하여야 한다.</p> <p>제16조(시설이용)</p> <p>8. <u>진남수영장</u> 내부는 금연건물이며, <u>수영장</u> 내부로는 <u>음식물(커피, 컵라면, 음료수, 빙과류)</u>을 절대 반입할 수 없다.</p> <p>제11조(강습)</p> <p>⑧ 회원은 수영 중 본인이 신체에 이상 징후를 느끼거나,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 즉각 수영을 중단하고 지도강사 또는 관리사무실에 통보한다.</p>	<p>하며, 이에 불응 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.</p> <p>7. <u>만12세 이하 초등학생</u>이 경영풀 자유수영 입장을 원할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 따른 안전상 문제로 보호자(가족,선생님,인솔자)가 동반 입장하여 이용하여야 한다.</p> <p>8. 수영장 내부로는 <u>외부음식물</u>을 절대 반입할 수 없다.</p> <p>9. 수영 중 신체에 이상 징후를 느끼거나,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 즉각 수영을 중단하고 <u>수영강사 또는 안전강사에게 통보해야한다.</u></p>
<p>제7조(회원의 자격제한)</p> <p>6. 장내질서와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 카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.</p> <p>가. 취중에 있는 자 와 시설 내 소란과 위해가 염려되는 자</p> <p>마. 용변의 배설이 불편하여 상습적으로 경</p>	<p>제 11조(수영장 출입제한 및 회원자격 박탈)</p> <p>① 다음의 경우는 수영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영폴, 샤워장, 탈의실,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배출하는 자</p> <p>나. 심신질환, 전염성질병, 문신 등 타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.</p> <p>다. 기타 광범위한 피부질환, 건강상 강습이 불가능한 자로 판단될 경우</p> <p>9. 본인 강습반이 아닌, 타 강습반에 들어간 경우(초급오전반 → 초급저녁반, 자유수영 → 초급새벽반 등등)</p> <p>라. 수영장 허가 없이 개인이 임의대로 강습 또는 수영지도를 할 경우</p> <p>8. 진남수영장 이용자 상호간의 상행위</p>	<p>3. 기타 수영장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의 출입제한 또는 회원자격이 박탈된 자<신설></p> <p>②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강제 퇴장시키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</p> <p>1. 화장을 지우지 않았거나 오일을 바른 경우<신설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타인에게 특정 영법, 수모, 행동 등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수영을 방해하는 경우<신설></p> <p>7. 수영장에서 클럽활동을 하는 경우<신설></p> <p>8. 이용자 상호간의 상행위 또는 금전거출 행위를 하는 경우</p>

현행	개정안
<p>를 일절 금하며, 적발 시 회원 자격박탈 및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>9. 기타 수영강사 또는 안전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</p>	<p>9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강습)</p> <p>⑦ 수영장 내 본인 부주의에 따른 시설물 파손, 훼손 등은 행위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이용자의 권리와 의무)</p> <p>③ 회원의 귀중품 또는 개인 휴대용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본인 관리에 있으며 만약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시설이 책임질 수 없다.(단, 귀중품의 경우 안내데스크에 보관 가능)</p> <p>제19조(탈의실 이용)</p> <p>① 락커룸 옷장 열쇠를 분실한 경우 교체비용 10,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.</p> <p>제17조(손해배상)</p> <p>① 수영장 건물 내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수영장은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.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</p>	<p>제 12조(손해배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락커룸 옷장의 열쇠를 분실 및 파손한 경우 교체비용 10,000원은 분실자가 부담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부주의, 지병,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② 시설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 수영장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p> <p>③ 배상의 범위는 여수시 영조물 배상 책임에 근거한다.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13조(분실물)</p> <p>락커룸, 샤워실 등 수영장 내의 회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 분실물은 분실물 보관대에 일괄 비치하며, 비치 후 찾아가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영장에서 임의 처분할 수 있다.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14조(고지)</p> <p>수영장은 본 이용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 비치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15조(기타)</p> <p>본 이용수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신의와 성실의 이용관행을 고려, 수영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.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16조(이용수칙의 효력 및 변경)</p> <p>① 본 이용수칙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안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내데스크에 약식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.</p> <p>② 수영장은 필요한 경우 본 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수칙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.</p> <p>③ 이용자는 변경된 이용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효력 발생일 이후의 지속적인 이용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</p>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본 이용수칙은 2020. 00. 00. 부터 시행한다.</p>